
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· 운영 안내

2022. 3. 28.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중앙사고수습본부

목 차

I. 외래진료센터 개요	1
II. 신청 요건 및 절차	2
III. 건강보험 수가	3
[참고]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	4
[서식] 외래진료센터 신청·변경서	6

I. 개요

- (추진배경)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, 검사, 처방·투약 등 적절한 외래진료 제공으로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('21.12.1~)
 -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 지침 개정*에 따라 음압격리 필수에서 감염관리 장비 구비, 소독·환기 등 조건 충족으로 기준 완화('22.3.8~)
 - * [참고]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

- (정의)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
 - (역할)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한 질환*에 대해 ▲ 검사, ▲ 처치, 수술, ▲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
 - *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, 신체적 문제(임신, 골절, 외상 등) 등도 가능
 - (운영시간)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(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)
 - (시설)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
 - * 감염관리 장비 구비, 소독·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

- (진료대상) 재택치료(병상대기자 포함)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
 - ※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
 - (진료절차)
 - ① (접수)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,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(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)에 진료
 - * 필요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예약 → 외래진료센터 접수 및 이동방법 안내
 - *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hira.or.kr)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단, 연락처, 진료시간 등 공개
 - ② (이동) 확진자 개인차량(본인운전도 가능)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, 필요시 지자체별 이송체계*를 활용하여 자택⇄의료기관으로 이송
 - *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,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
 - ③ (대면진료)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, 처치, 수술,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

II. 신청 요건 및 절차

- (신청 요건)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(별도 시설·장비비 지원 없음)

○ 시설 기준

-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
 - * 감염관리 장비 구비,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
- 진료실, 방사선촬영실,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·물품 구비

○ 인력 기준

- 의사 1명 이상, 간호인력(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) 1명 이상 상근

구분	세부내용	비고
의사	① 내과, 가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, 이비인후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되, -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(임신, 골절, 외상 등)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가능 ②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원 ※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	※ 먹는 치료제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

- 진료보조*, 행정,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
 - * 환자 분류, 체온 측정,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

□ (신청 절차)

○ (신청)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 신청

- ①(서식)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·변경서 작성, ②출력하여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, ③팩스(033-811-7621)로 송부
 - *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

- **4.8.일부터**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(www.hurb.or.kr)로 신청하며,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

○ (신청의 취소)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미해당 시 기관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

III. 건강보험 수가

※ 개방형 외래진료센터(보건기관)의 경우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1편 제1부 I.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

□ **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에 한해, 수가 적용**

○ (대상기관)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*

*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 및 의원

① (감염예방관리료)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 '코로나19 외래 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' 청구 가능

- (대상환자) 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

② (주사치료제 관리료)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 치료제*를 투여하는 경우 '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' 청구 가능

* 렉키로나주, 베클루리주 등(「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」(방대본) 참고)

- (대상환자)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

③ (주사실 격리관리료)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한 경우 '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' 청구 가능

- (대상환자)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

④ (기타)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, CT, 혈액검사, 대면진료 등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, 검사료, 별도 행위수가 적용

* 환자 본인부담금은 코로나-19 격리입원치료비(방대본)에서 부담

* 자세한 사항은 '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(제2판)' 참고

1 코로나19 환자 감염관리

1. 코로나19 환자 격리 기본원칙

- 코로나19 환자(격리기간 중인)는 코로나19가 아닌 환자와 병실을 분리한다.
-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**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(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)**을 적용할 수 있다.
 - 단,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를 권고한다.
-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대상*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, **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(환기 등)을 마련하여** 적용한다.

* 에어로졸 발생 가능 의료시술이 필요한 경우,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

2.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

- 코로나19 환자는 구분된 진료 구역에서 대기하고 다른 환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**별도 시간 또는 진료공간을 활용**할 수 있다.
 - 별도 진료 공간이 없는 경우 타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료하지 않는다.
- 진료 참여 인력은 지침에 따른 **개인보호구 4종(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, 안면보호구)**를 착용한다.
- 가능하면 에어로졸 생성 시술(예: 핸드피스, 쓰리웨이 실린지,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)을 피한다. 필요한 반드시 경우 개별 진료실에서 수행하며 환기와 소독을 시행한다. 이 경우 진료실 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.
- 치과 치료는 필수적인 치료만 제한하여 제공하며, 참여 의료인력도 필수인력으로만 제한한다.
- 환자는 진료시간 중 맨 마지막 일정으로 예약하는 것을 고려한다.
- **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, 별도구역에 대기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한다.** 환자간 최소 1.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.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.

2 외래진료시 감염관리

1. 접수 및 대기

- 사전예약제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.
- 진료 예약 시 환자의 **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**한다.
- **환자 간 적절한 거리(최소 1m이상)**를 유지하도록 한다.
-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, 인형 등 진료 관련 **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는다.**
- 진료 대기 구역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및 거리두기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**알코올 손소독제 비치, 안내 포스터 부착** 등을 시행한다.

2. 비밀노출 상황별 관리(치과, 이비인후과, 소아청소년과 등)

-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비밀 노출 정도에 따라 **보호구를 착용**한다.
환자의 비밀로 오염된 경우 마스크는 즉시 폐기하고 새것으로 착용한다.

2-1. 단순 문진, 시진, 상담

- 의료진은 **마스크(수술용 마스크 또는 KF94)**를 착용하고, 환자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 **접촉 전·후 손 위생**을 시행한다.
-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**마스크**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. **진료실 출입 전·후 손 위생**을 한다.

2-2. 점막, 타액 접촉 진료, 검사 시

- 의료진은 **마스크(KF94 동급이상)**와 **일회용 장갑**을 착용하며, 장갑 착용 **전·후 손위생**을 시행한다.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은 **안면보호구(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)**를 착용하며,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교체 또는 표면을 소독하여 사용한다.
-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**마스크**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. **진료실, 검사실 출입 전 후 손위생**을 하도록 한다.

2-3. 비밀이 발생하는 진료(치료) 시: 치과 초음파 스켈러나 핸드 피스 사용 등

- 의료진은 **마스크(KF94 동급 이상)**와 **안면보호구(페이스 쉴드 등)**, **일회용 가운, 장갑**을 착용한다. 장갑과 일회용 가운은 매 환자 사이 교환하며, 안면보호구와 마스크의 경우 진료를 연속하는 경우 교체없이 연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. 단, 일반환자와 확진자간 교차 진료를 시행하거나,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교체하여 사용한다.
- 보호구 탈의 후 **손위생**을 수행하며, 마스크는 진료영역 밖에서 탈의한다(비말핵이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 있음).
- 환자는 치료 전에 마스크를 벗고, **치료 완료 후 다시 마스크**를 착용하도록 한다.
- **진료실**에는 해당 환자에게 사용할 기구와 물품만 준비한다. 소독과 멸균이 어려운 표면은 일회용 덮개로 덮거나 진료 후 소독한다.
- 사용한 기구 및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구와 물품은 주변이 오염되지 않게 수거한 후 재처리 과정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한다.
- 환자 진료 후 주변 표면은 소독티슈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소독한다. 오염된 덮개는 제거한다.
- 환자마다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새것으로 교환하고, 주변 표면 소독을 시행한다. 치과수관은 환자 진료 전·후 물빠기를 시행한다.

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·변경서

의료기관	의료기관명		요양기호	
	기관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염병전담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점전담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안심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기전담클리닉 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	주소		전화번호	
	의료기관종별	[] 의원, [] 병원, [] 종합병원, [] 상급종합병원		

외래진료센터	시작일		종료일	
--------	-----	--	-----	--

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체크리스트	예	아니오
1)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.		
2) 감염관리 장비 구비, 소독·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.		
3) 의사, 간호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		

참여인력 및 운영계획				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기관 여부 (O,X)
참여인력	의사	간호인력	행정인력	
	()명	()명	()명	
운영계획	진료시간		진료 예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*	소아 진료 가능 여부 (O,X)
	평일		000-0000-0000	
	주말 및 공휴일		(‘010-’ 불가)	

작성자	성 명 : 소속부서 : / 직책 : 전화번호 :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년 월 일

개설자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